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동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5.

발 의 자 : 신동욱 · 강승규 · 김상훈
김태규 · 김승수 · 안철수
조지연 · 강대식 · 엄태영
박상웅 · 이철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.

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,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병역신고사항”을 “병역신고사항 및 공직후보자 본인의 병적기록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)	제5조(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)
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 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 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 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<u>병역신고사항</u>	2. ----- ----- <u>병역신고사항 및 공직후보자</u> <u>본인의 병적기록표</u>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